

(15)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개요

2022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비과세·감면 현황)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21년(결산)	'22년(결산)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222,539,024	258,352,624	35,813,600
비과세	54,117,474	53,581,007	-536,467
감면	168,421,550	204,771,617	36,350,067
지방세 징수액(B)	2,669,438,331	2,867,199,981	197,761,650
비과세·감면율(A/A+B)	7.7%	8.3%	0.6%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21년(결산)		'22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22,539,024	100.0	258,352,624	100.0	35,813,600	16.1
1	일반공공행정	32,004,902	14.4	32,562,230	12.6	557,328	1.7
2	공공질서 및 안전	46,431	0.0	109,633	0.0	63,202	136.1
3	교육	5,214,837	2.4	3,602,416	1.4	-1,612,421	-30.9
4	문화 및 관광	3,678,403	1.7	4,529,484	1.8	851,081	23.1
5	환경보호	1,869	0.0	625	0.0	-1,244	-66.6
6	사회복지	26,051,482	11.7	51,200,200	19.8	25,148,718	96.5
7	보건	216,307	0.1	222,925	0.1	6,618	3.1
8	농림해양수산	29,696,099	13.3	25,952,912	10.0	-3,743,187	-12.6
9	산업·중소기업	47,108,652	21.2	40,557,582	15.7	-6,551,070	-13.9
10	수송 및 교통	15,477,848	7.0	21,273,726	8.2	5,795,878	37.4
11	국토 및 지역개발	39,010,285	17.5	54,816,650	21.2	15,806,365	40.5
12	과학	14,601	0.0	131,691	0.1	117,090	801.9
13	국가	6,331,258	2.8	6,728,473	2.6	397,215	6.3
14	외국	15	0.0	0	0.0	-15	-100.0
15	기타	17,686,035	7.9	16,664,077	6.5	-1,021,958	-5.8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21년(결산)		'22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증감율	
총 계	222,539,024	100	258,352,624	100.0	35,813,600	16.1
보통세	215,893,347	97.0	251,426,457	97.3	35,533,110	16.5
취득세	213,151,107	95.8	249,336,664	96.5	36,185,557	17.0
등록면허세	2,742,240	1.2	2,089,793	0.8	-652,447	-23.8
목적세	6,645,677	3.0	6,926,167	2.7	280,490	4.2
지역자원시설세	6,645,469	3.0	6,925,192	2.7	279,723	4.2
지방교육세	208	0.0	975	0.0	767	368.8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천원)

감 면 유 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합 계	222,539,024	258,352,624	35,813,60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	26,357,878	24,846,783	-1,511,09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3,936,912	4,851,034	914,12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7,637	28,862	1,225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407,807	388,019	-19,788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1,120	575	-54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273,548	2,446,957	1,173,409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29	0	-29

감면 유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6,402	109,633	63,231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0	4,860	4,86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792,319	539,804	-252,515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8	29	1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6	7	1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353,178	2,626,753	-1,726,425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3	0	-3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69,303	430,963	361,66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3,678,231	4,434,892	756,661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0	10	1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72	17,188	17,016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0	77,394	77,394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0	22	22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242	553	311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1,627	50	-1,577
장애인에 대한 감면	3,829,525	3,503,045	-326,48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66	487	321

감면 유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3,753,870	2,836,980	-916,89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985,976	2,163,838	177,862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3,620	1,500	-12,1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793,597	712,295	-81,30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8,697	0	-8,697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241,619	225,426	-16,19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974,621	36,981,098	29,006,47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67,765	66,951	-814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003,436	4,454,300	-2,549,136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378,590	254,280	-124,310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3,036	0	-3,036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13,271	222,925	9,654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5,761,243	13,996,279	-1,764,964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0	490	49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3,261,890	3,183,121	-78,769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4,543,994	3,616,956	-927,038

감면 유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임업인에 대한 감면	180,032	93,296	-86,736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07,651	47,545	-60,106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00,682	288,852	88,170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2,356,966	1,575,288	-781,67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2,564,122	2,597,358	33,236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869	0	-869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718,650	553,727	-164,92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6,545,092	6,846,291	301,199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81,324	0	-181,324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652	25,565	24,913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14,179,244	2,062,389	-12,116,855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19	33,150	33,03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7,699	11,711	4,012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31,016	1,699,447	1,668,431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368,864	206,966	-161,898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36,812	356,541	119,729

감면 유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188	1,152	-36
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25,556,642	29,314,370	3,757,728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5,261	15	-35,246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4,500	4,500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8,300	127,566	119,266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4,301,753	5,760,940	1,459,187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9,439,700	13,759,835	4,320,135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0	23,394	23,394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103,358	1,280,571	177,213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589,476	316,905	-272,57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480,029	2,000,680	-479,3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37,833	10,359,827	10,321,994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417	0	-417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36,391,386	40,764,872	4,373,4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832	0	-1,83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98,788	1,691,271	1,592,483

감면 유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14,601	131,691	117,090
국가에 대한 비과세	5,515,764	5,981,158	465,394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773,826	699,820	-74,006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1,668	47,495	5,827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15	0	-15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5,921,219	4,883,147	-1,038,072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80,231	145,633	-134,598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989,128	2,361,407	372,27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7,917,904	7,917,813	-91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384	46	-338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810,019	925,627	115,60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95,323	122,996	27,67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0	5,214	5,21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666,514	282,929	-383,58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2	0	-1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5,301	19,265	13,964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II.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32,004,902	32,562,23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26,357,878	24,846,783
		취 득 세	23,664,599	22,035,860
		등록면허세	60,392	66,632
		지역자원시설세	2,632,887	2,744,291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소 계	3,936,912	4,851,034
		취 득 세	3,936,912	4,851,034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7,637	28,862
		지역자원시설세	27,637	28,862
4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②)	소 계	407,807	388,019
		취 득 세	317,815	295,349
		등록면허세	6,555	6,670
		지역자원시설세	83,437	86,000
5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1,120	575
		취득세	1,061	512
		지역자원시설세	59	6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6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50%)(지방세 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1,273,548	2,446,957
		취 득 세	1,273,548	2,446,957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46,431	109,633
7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29	0
		취 득 세	29	0
8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46,402	109,633
		취 득 세	46,081	108,979
		등록면허세	257	376
		지역자원시설세	64	278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교육		합 계	5,214,837	3,602,416
9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792,319	539,804
		취 득 세	641,473	381,933
		등록면허세	5,030	3,682
		지역자원시설세	145,816	154,189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1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8	29
		지역자원시설세	28	29
11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6	7
		지역자원시설세	6	7
1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4,353,178	2,626,753
		취 득 세	3,078,232	1,363,369
		등록면허세	5,728	5,825
		지역자원시설세	1,269,218	1,257,559
13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소 계	3	0
		지역자원시설세	3	0
14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3③, §44)	소 계	0	4,860
		취 득 세	0	4,860
15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69,303	430,963
		취 득 세	69,303	430,963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3,678,403	4,529,484
16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3,678,231	4,434,892
		취 득 세	2,880,832	3,599,423
		등록면허세	1,604	1,018
		지역자원시설세	795,795	834,451
17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0	10
		지역자원시설세	0	10
18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소 계	172	17,188
		취 득 세	172	17,188
19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소 계	0	77,394
		취 득 세	0	77,394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1,869	625
20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소 계	0	22
		취 득 세	0	2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2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소 계	242	553
		취 득 세	242	553
22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1,627	50
		취 득 세	1,627	5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26,051,482	51,200,200
23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3,829,525	3,503,045
		취 득 세	3,829,525	3,503,045
2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66	487
		취 득 세	166	319
		지역자원시설세	0	168
25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378,590	254,280
		취 득 세	266,649	135,826
		등록면허세	2,047	576
		지역자원시설세	109,894	117,878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2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3,753,870	2,836,980
		취 득 세	3,753,870	2,836,980
2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1,985,976	2,163,838
		취 득 세	1,978,067	2,155,388
		지역자원시설세	7,909	8,450
28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 계	13,620	1,500
		취 득 세	13,620	1,500
2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793,597	712,295
		취 득 세	789,499	708,150
		등록면허세	12	12
		지역자원시설세	4,086	4,133
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소 계	8,697	0
		취 득 세	8,697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31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241,619	225,426
		취 득 세	241,619	225,426
3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4)	소 계	7,974,621	36,981,098
		취 득 세	7,974,621	36,978,287
		지역자원시설세	0	2,811
3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소 계	67,765	66,951
		등록면허세	67,765	66,951
34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폐지) -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소 계	7,003,436	4,454,300
		취 득 세	7,003,436	4,454,300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보건		합 계	216,307	222,925
35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 한 국원자력의학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7)	소 계	3,036	0
		취 득 세	3,036	0
36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213,271	222,925
		취 득 세	213,208	222,853
		등록면허세	63	72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29,696,099	25,952,912
37	농업인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 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 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소 계	15,761,243	13,996,279
		취 득 세	15,754,338	13,996,040
		등록면허세	6,905	239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38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 경감(1000분의 8)(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소 계	0	490
		취 득 세	0	490
39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 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차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소 계	3,261,890	3,183,121
		취 득 세	3,261,890	3,183,121
4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4,543,994	3,616,956
		취 득 세	4,543,881	3,616,956
		등록면허세	113	0
41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소 계	180,032	93,296
		취 득 세	180,032	93,296
42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소 계	107,651	47,545
		취 득 세	91,138	42,694
		등록면허세	9	9
		지역자원시설세	16,504	4,84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43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200,682	288,852
		취 득 세	200,682	288,852
44	영농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용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2,356,966	1,575,288
		등록면허세	2,356,966	1,575,288
45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소 계	2,564,122	2,597,358
		취 득 세	2,564,122	2,597,358
46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직접사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감면	소 계	869	0
		취 득 세	869	0
4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718,650	553,727
		취 득 세	718,650	553,727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47,108,652	40,557,582
48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소 계	6,545,092	6,846,291
		취 득 세	6,529,192	6,822,291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목적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조③) 	등록면허세	15,900	24,000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181,324	0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2%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취 득 세	181,324	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소 계	119	33,1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취 득 세	119	33,15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소 계	7,699	11,711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취 득 세	7,699	11,711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52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소 계	368,864	206,966
		취 득 세	368,864	206,966
5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소 계	31,016	1,699,447
		취 득 세	31,016	1,699,447
54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0)	소 계	236,812	356,541
		취 득 세	231,399	351,310
		등록면허세	5,413	5,231
55	광업 지원을 위한 경감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소 계	1,188	1,152
		등록면허세	1,188	1,15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56	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대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대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25,556,642	29,314,370
		취 득 세	25,556,642	29,314,370
5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8호)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652	25,565
		취 득 세	24	25,210
		등록면허세	628	355
58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소 계	14,179,244	2,062,389
		취 득 세	14,179,244	2,062,389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5,477,848	21,273,726
59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35,261	15
		취 득 세	35,261	15
60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1% 세율 및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소 계	0	4,500
		취 득 세	0	4,500
61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소 계	8,300	127,566
		취 득 세	8,300	127,566
62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4,301,753	5,760,940
		취 득 세	4,301,753	5,760,940
63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40만원 이하) 및 공제(40만원초과 시 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9,439,700	13,759,835
		취 득 세	9,439,700	13,759,83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64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 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9)	소 계	0	23,394
		취 득 세	0	23,394
65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75~100%)(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④)	소 계	1,103,358	1,280,571
		취 득 세	1,103,358	1,280,571
66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소 계	589,476	316,905
		취 득 세	589,476	316,905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39,010,285	54,816,650
67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2,480,029	2,000,680
		취 득 세	2,480,029	2,000,680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75% 경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75% 경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④)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경감, 60제곱미터 75% 경감, 85 제곱미터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4⑤)	소 계	37,833	10,359,827
		취 득 세	37,833	10,359,82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69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취득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30%,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소 계	417	0
		취 득 세	417	0
7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 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의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36,391,386	40,764,872
		취 득 세	36,391,386	40,764,872
7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1,832	0
		취 득 세	1,832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7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여 하는 사업,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 조례)	소 계	98,788	1,691,271
		취 득 세	98,788	1,691,271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14,601	131,691
73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	소 계	14,601	131,691
		등록면허세	14,601	131,691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국 가		합 계	6,331,258	6,728,473
74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과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소 계	5,515,764	5,981,158
		취 득 세	4,075,255	4,417,570
		등록면허세	25,599	29,520
		지역자원시설세	1,414,910	1,534,068
75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773,826	699,820
		취 득 세	773,826	699,82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76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41,668	47,495
		지역자원시설세	41,668	47,495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외 국		합 계	15	0
77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15	0
		등록면허세	15	0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기 타		합 계	17,686,035	16,664,077
7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95,323	122,996
		취 득 세	166	24,001
		지역자원시설세	95,157	98,995
79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5,921,219	4,883,147
		취 득 세	5,921,219	4,883,14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8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 계	280,231	145,633
		취 득 세	280,231	145,633
8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세율특례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1,989,128	2,361,407
		취 득 세	1,989,128	2,361,407
8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7,917,904	7,917,813
		취 득 세	7,917,904	7,917,813
8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 계	384	46
		취 득 세	384	46
8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810,019	925,627
		취 득 세	649,437	772,810
		등록면허세	160,582	152,81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21년(결산)	'22년(결산)
85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소 계	0	5,214
		취 득 세	0	5,214
86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666,514	282,929
		취 득 세	666,514	282,929
87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12	0
		취 득 세	12	0
88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5,301	19,265
		등록면허세	4,868	17,677
		지방교육세	208	975
		지역자원시설세	225	613